

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13.

발의자 : 이상기, 백선아, 신민철,
김지훈, 전용균, 장근환

1. 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기준을 명확화함 (안 제3조)

나.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타 회계 진출 근거를 마련함 (안 제6조의2)

다. 변경된 관계 규정 명칭을 반영함 (안 제14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)

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은 가급적”을 “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과 여유자금은 가급적”으로, “예치·관리하되 여유재원은 「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,”를 “예치·관리하고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기금의 전출) 시장은 영 제75조의2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”를 “「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제14조(관계규정의 적용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<u>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	<p><u>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관계규정의 적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을 따른다.</p>
---	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시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하는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으므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4. 작성자





시민안전관 안전관 홍 철 호

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9조의2(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)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☑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, 2021. 7. 19. 시행)

〈내부거래〉

구분	세출 (주는회계)			세입 (받는회계)		
	회계별	대응과목		회계별	대응과목	
전입·전출금	일반/기타	702-00	기금전출금 	기금	721-03	기타회계전입금
	공기업	공기업과목		공기업	721-01	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
		상·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	316, 403-02			
기금	701-00	기타회계전출금 	일반/기타	721-04	기금전입금	
전입·전출금	기금	702-00	기금전출금 	공기업	공기업과목	
					상·하수도	613-01, 672-01, 672-02, 672-03, 672-04, 173-02, 175-01
					공영개발	672-01, 672-02, 672-03, 672-04, 174-01
	기금	702-00	기금전출금 	기금	721-04	기금전입금

※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,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

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5조의2(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·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(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)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